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시행)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조례 제3608호, 2007. 5. 7. 공포, 2007. 6.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 중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함.(안 제80조 신설)
- 부천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 신설)
- 부천시공동위원회 안에 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3조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경기도에서는 2007년 6월 8일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시가 조례를 늦게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는 없는지?	○ 동조례로 인해 우리시에 현재 민원 사항 없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적극 하겠음.
○ 부천시 공동위원회의 위원 위촉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 현재 우리시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개의 위원회 기능을 종합한 업무에 대해 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할 계획임.
○ 공동위원회 명칭이 모호한데 명칭을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 명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할 수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호
의결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제출년월일 : 2007. 6. 29.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시행)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조례 제3608호, 2007. 5. 7. 공포, 2007. 6.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 중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함.(안 제80조 신설)
- 부천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 신설)
- 부천시공동위원회 안에 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3조 신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3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앞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하는 사항”을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9조 다음에 “제2절 공동위원회”를 삽입한다.

제80조부터 제83조를 각각 제84조부터 제87조로 하고, 제80조부터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건축위원회와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39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천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81조(공동위원회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74조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 및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82조(공동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부터 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신 설></p>	<p><삭 제></p> <p>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현행	개정안
<p>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3. <u>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u></p> <p>4. <u>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u></p> <p>5. <u>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u></p> <p>6. <u>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u></p> <p>7. <u>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u></p> <p>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현 행	개 정 안
<p>1. ~ 6. (생 략)</p> <p>②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16.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도시계획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p> <p>1. ~ 1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도시계획위원회</p>
<p>제7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이상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人以下로 구성하며, 도시</p>	<p>제7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p> <p>② ----- -----7 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다.</p> <p>③ ~ ④ (생략)</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 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 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지정하 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 ----- -----.</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 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p>
<p>〈신 설〉</p>	<p>제2절 공동위원회</p>
<p>〈신 설〉</p>	<p>제80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 능) ① 부천시건축위원회와 부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39 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천시공 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p>〈신설〉</p>	<p>제81조(공동위원회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74조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 및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p>
<p>〈신설〉</p>	<p>제82조(공동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부터 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3조(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생략)	제8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종전의 제80조와 같음)
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종전의 제81조와 같음)
제8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생략)	제8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종전의 제82조와 같음)
제83조(시행규칙) (생략)	제87조(시행규칙) (종전의 제83조와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 1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 ② (생략)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의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생략)

②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2.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 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5.7>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5.7]